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1 | 2025.04.14 (2025.04.07~2025.04.1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07~2025.04.1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교육부>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전 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4.14부터 4.16까지 <대정부 질문>이 실시되며,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과방위>, <산자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산업통상자원부) 7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4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4인) 16
-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17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의원 등 10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의원 등 11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의원 등 10인) 21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의원 등 11인) 21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2

• 필수수산물 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2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2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3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4인)	2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2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4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8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29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	29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2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0 (2025년 4월 2째주)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보고 관련 시사점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령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 → 15조원 확대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30~80%) -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2025-04-09
---------	---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
-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
-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지원 확대
-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

②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
-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

③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
-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5.上)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25.3분기)을 마련

④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

금융위원회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

2025-04-09

금융위원회는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음.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 증권업은 외형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주요 글로벌IB는 M&A, 채권, 주식 등 IB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됨. '17년 도입 이후 그간 영위 사례가 없었던 종합투자계좌(IMA)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임. 또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짐

(1)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2) 종투사 지정

-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3) 증권업 제도정비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

(4)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발표

- 부동산 NCR에 실질 리스크 반영 및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강화
-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출 방식도 개선
- 종투사 건전성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중·장기)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0-09 시행 예정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화체육관광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6-04-09 시행 예정
---------	------------------	------------------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함 (제2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5조 및 제6조)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④ 치유관광사업자 등록·등록취소,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⑤ 치유관광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9조 및 제20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3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08 시행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거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사주의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08 시행

온실가스 목표 관리 제도를 장기적·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는 계획기간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이행 점검의 절차를 정비하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녹색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5.04.09. ~2025.05.19.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 ②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 제5항 개정)
 -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 ③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안 제8조 제7항 개정)
 -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④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⑥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⑦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⑧ 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 (안 제45조 삭제)

-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 문의처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전화: 044-203-6261, 팩스: 044-203-648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09.
~2025.05.20.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들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제1항제5호)
- ②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들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 ③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1, 팩스: 044-201-739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09.
~2025.05.19.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10.
~2025.05.20.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 검사기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 위생용품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2025.04.08.
~2025.05.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02-2100-2512, 팩스: 02-2100-263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4조)		
정무위원회	공정배상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04-09 발의
금융시장 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매도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5-04-09 발의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1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한편,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배달플랫폼 등 일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제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제3호)**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②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 ③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04-07 발의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7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7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25-04-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025-04-07 발의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2025-04-08 발의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 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025-04-10 발의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으로 미디어 매체와 영상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작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2025-04-07 발의

급격한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원에서 2023년 6,247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음. 이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자재와 전기·유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
인)

2025-04-11 발의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2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
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4인)

2025-04-08 발의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과 중간 경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설비·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0조제7항)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4-07 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025-04-08 발의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 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다른 단지·특구 등과의 연계·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증권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2조제4항)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5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임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77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6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025-04-07 발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안 제7조제2항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025-04-10 발의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5-04-10 발의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2025-04-11 발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4-08 발의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04-09 발의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

2025-04-09 발의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폭이 좁고 긴 철도부지는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현행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제2항),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 제6조제2항제8호)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등 12인)

2025-04-11 발의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7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4/14(월) 14:00	-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15(화) 14:00	-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
	4/16(수) 14:00	-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4/17(목) 14:00	- 안건 심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4/16(수) 10:00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4/16(수) 10:00	- 법안 심사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4/17(목)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4/18(금) 10:00	-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현안질의
산자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4/16(수) 10:00	- 법안 심사
	중소벤처기업 소위	4/17(목) 09:30	-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4/15(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4/16(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14(월) 14:00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서미화·김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4/14(월) 14:0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프라 혁신 전략	송재봉·이재관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4/14(월) 14:00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편법 사례 분석	김남근·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4/15(화) 15:0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강준현·강훈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6(수) 10:00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정혜경·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4/17(목) 10:00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김남근·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4/18(금) 10:00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	이준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4/14(월)	「Data+」 제6호(2025-6호) 발간	국회도서관	
	4/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8호(2025-5호) 발간		
	4/15(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7호(2025-7호) 발간		
	4/16(수)	「금주의 서평」 제724호(2025-15호) 발간		
	4/15(화)	「NABO Focus」 제10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7(월)	「Data+」 제5호(2025-5호)	국회도서관	
	4/9(수)	「금주의 서평」 제723호(2025-14호)		
	4/7(월)	「2025년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4/10(목)	「NABO Focus」 제10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07.~2025.04.1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8(화)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4/11(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0 (2025년 4월 2째주)
4/11(금)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보고 관련 시사점
4/11(금)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령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